

행정처분기준 (제1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"1차"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, "2차"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며, "3차"는 2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처 분 기 준		
		1차	2차	3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		
나. 천재지변, 사업시행자의 파산,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악화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2호	공사 중지 또는 변경	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	
다.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지 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3호	시정명령이 나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·변경 또는 이전 명령	공사 중지 또는 변경	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
라.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 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4호	시정명령	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	